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826

발의연월일: 2025. 6. 13.

발 의 자:전용기・민병덕・정준호

신정훈 • 전진숙 • 장철민

권칠승 · 문진석 · 황운하

한창민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전동화 등의 제반 규정이 마련되었음. 국 내에서도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기굴착기가 출시되었고, 동 건설 기계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급 상황은 미진함.

이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저공해건설기계를 의무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규정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저공해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국내에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아울러,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업 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임차 의무를 부

과하고 그 외의 자에도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임차를 권고할 수 있 도록 규정(안 제58조의5).

- 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임차계획과 실적을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58조의6 및 제58조의7).
- 다. 환경부장관이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임차를 촉진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8조의8 및 제58조의9).
- 라. 환경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0조의5).
- 마.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인증시험대행기관 등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0조의6).
- 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벌칙 부과(안 제9 1조).
- 사.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 등, 신고하지 않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한 경 우 과태료 부과(안 제94조제2항제5호 및 제94조제3항제10호의2).

법률 제 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5의 제목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을 "(저공해자동차 등의 구매·임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을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으로, "자동차를 새로"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새로"로, "저공해자동차를"을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로 하며, 같은 조 제 2항 중 "자동차를 가진"을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가진"으로, "자동차를 새로"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가진"으로, "자동차를 새로"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새로"로, "저공해자동차를"을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저 공해자동차를"을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로, "저공해자 동차의"를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로, "저공해자 동차의"를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의"로 한다.

제58조의6의 제목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계획)"을 "(저공해자동차 등의 구매·임차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동차를"을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로, "저공해자동차 구매"를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구매"로 한다.

제58조의7의 제목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실적)"을 "(저공해자 동차 등의 구매·임차 실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저공해자 동차의"를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로 한다.

제58조의8의 제목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을 "(저공해자동차 등의 구매·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으로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저공해자동차의"를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로,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를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임차"로 한다.

제58조의9의 제목 "(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저공해자동차 등 관련 정보의 제공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를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출시와"로,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를"을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 건설기계의 구매·임차를"로 한다.

제60조의5 및 제6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0조의5(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60조 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인력·시설 등 환경부렁으 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 ③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 3.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4.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 ④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60조의6(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환경부장관 은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60조의5제3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 3. 제60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부, 제62조에"를 "여부, 제60조의6 에 따른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2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제8호의3 및 제8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60조의5에 따라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제91조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제60조의5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제94조제2항제5호 중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0호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3. 제60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9까지 및 제9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혂 행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 등의 구 ·임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매·임차 등) ①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자동차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 또는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 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 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야 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 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 또는 건설기<u>계를 가진---자동</u> 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차 또는 건설기계를 새로---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 나 임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 기계를----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 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 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 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계를-----저공해자동차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의 -----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8조의6(저공해자동차의 구매 •임차 계획)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u>자동차를</u> 새로 구매하거 나 임차하려는 경우 회계연도 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 의 <u>저공해자동차 구매</u>・임차 계획(이하 "구매・임차계획"이 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8조의7(저공해자동차의 구매 ·임차 실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구매·임차계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실 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 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8조의8(저공해자동차의 구매 ·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환경부장관은 <u>저공해자동차의</u> 구매·임차 촉진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 가기관등의 장에게 업무를 평 가하는 항목에 <u>저공해자동차</u>

제58조의6(저공해자동차 등의 구
<u>매·임차 계획)</u> 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
<u>기계 구매</u>
·.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의7(저공해자동차 등의 구
<u>매·임차 실적)</u> ①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
계의
·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의8(저공해자동차 등의 구
매・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
<u>청)</u> <u>저공해자동차 및</u>
저공해건설기계의
<u>저공해자동차</u>

구매·임차 실적의 반영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8조의9(저공해자동차 관련 정 저 보의 제공 등)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u>저공해자</u> 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u>저공해자동차의 구</u> 매·임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및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임차
제58조의9(저공해자동차 등 관련
정보의 제공 등)
<u> </u>
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출
시와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
기계의 구매·임차를
<u>기계에 기계 표시 =</u>
· 제60조의5(저감장치 등 인증시험
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60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저감장치 등 인증
시험"이라 한다)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

- 은 지정받은 사항 중 인력·시설 등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저감장치 등 인증

 시험을 하는 행위
- 3.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과 관 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4.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을 하는 행외
- ①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 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

<신 설>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 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 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

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6(저감장치 등 인증시험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60조의5제3항 각 호의 금 지행위를 한 경우
- 3. 제60조의5제4항에 따른 지

 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1	 - —
				 -
				 - —
				 _
				 -

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 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 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 하여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 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 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 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 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 항만 해당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 의 적정이행 여부, 제38조의2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 수 여부, 황함유기준 준수 여 부, 제42조 본문에 따른 연료 의 제조 • 판매 • 사용 금지 또 는 제한 등의 조치 이행 여부,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 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 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0조에 따른 인증 여 부,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u>여</u>
<u>부,</u>	제60조의6에	따른 저감장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 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 사 업무,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 제76조 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의 준수 여부, 제76조의10 제1항 또는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 회수 등에서 냉매관 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 사하게 할 수 있다.

1. ~ 8. (생 략) <신 설>

<u>8의2</u>. · <u>8의3</u>. (생략)

9. ~ 13. (생략)

② ~ ⑤ (생 략)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2조에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제60조의5에 따라 저감
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으
로 지정된 자
<u>8의3</u> . · <u>8의4</u> . (현행 제8호의2
및 제8호의3과 같음)
9. ~ 1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91조(벌칙)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5의2·5의3 (생 략)

<신 설>

6. ~ 13. (생 략) 제94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4. (생 략)
- 5.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u>저</u> <u>공해자동차</u>의 구매·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같은 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10. (생 략) 10의2 (생 략) <신 설>

.
1. ~ 5. (현행과 같음)
5의2·5의3 (현행과 같음)
5의4. 제60조의5제3항제1호 또
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u>한 자</u>
6. ~ 13. (현행과 같음)
세9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1. ~ 4. (현행과 같음)
5 <u>국</u>
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
<u>계</u>
③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현행과 같음)
10의3. 제60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
<u>짓으로 신고를 하고 저감장</u>
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대행

	<u>한 자</u>
11. ~ 16. (생 략)	11. ~ 16.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